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k㎡)	비 고
합 계			503.82	
서울 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홍지동	8.41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1.89	
	중랑구	망우동, 면목동, 신내동	4.62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5.45	
	강북구	미안동, 수유동, 우이동	11.91	
	도봉구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9.41	
	노원구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15.92	
	은평구	갈현동, 구산동, 녹번동, 불광동, 수색동, 신사동, 역촌동, 진관동	12.66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1.67	
	마포구	상암동	0.09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0.97	
	강서구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과해동, 마곡동, 방화동, 오곡동, 오쇠동, 외발산동	15.59	
	구로구	개봉동, 궁동, 오류동, 온수동, 천왕동, 향동	3.54	
	금천구	시흥동	1.64	
	관악구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7.70	
	서초구	내곡동, 방배동, 신원동, 염곡동, 우면동, 원지동	2.31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일원동, 자곡동	3.11	
	송파구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0.93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길동, 둔촌동, 명일동, 상일동, 암사동	7.49	
인천 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굴현동, 노오지동, 다남동, 동양동, 독실동, 목상동, 박촌동, 방축동, 병방동, 상야동, 서운동, 선주지동, 오류동, 용종동, 이화동, 임학동, 장기동, 평동, 하야동	25.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야탑동, 운중동, 수정구 고등동, 단대동, 둔전동, 복정동, 사송동, 산성동, 수진동, 시흥동, 신촌동, 신흥동, 심곡동, 양지동, 오야동,	33.75	

경기도		창곡동, 태평동, 중원구 갈현동, 금광동, 도촌동, 상대원동, 성남동, 여수동, 은행동, 하대원동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의정부	가능동, 고산동, 금오동, 낙양동, 녹양동, 민락동, 산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자일동, 장암동, 호원동	49.78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비산동,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안양동	30.15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괴안동, 범박동, 소사본동, 송내동, 옥길동, 오정구 고강동, 대장동, 삼정동, 여월동, 오정동, 원종동, 작동, 원미구 도당동, 소사동, 역곡동, 원미동, 춘의동	11.74	
	광명시	광명동, 노온사동, 소하동, 옥길동, 일직동, 철산동, 하안동	6.72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당동, 신원동, 원흥동, 도내동, 성사동, 북한동, 효자동, 지축동, 오금동,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벽제동, 선유동, 고양동, 대자동, 관산동, 토당동,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신평동, 행신동, 화전동, 현천동, 덕은동, 향동동, 일산동구 백석동, 사리현동, 산향동, 식사동, 장향동, 풍동	109.03	
	과천시	갈현동, 과천동, 관문동, 막계동, 문원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	22.53	
	구리시	갈매동, 교문동, 사노동, 수택동, 아천동, 인창동, 토평동	12.28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 덕풍동, 풍산동, 초일동, 하산곡동, 창우동, 배알미동, 미사동, 천현동, 신장동, 당정동, 감이동, 광암동, 학암동, 향동, 상산곡동, 초이동, 망월동, 선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춘궁동	70.14	
	김포시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17.24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 다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74호에 따른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의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허가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지정 】

